
2026년 2학기
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사업
업무처리기준(안)

2026. 8.

한 국 장 학 재 단
인 재 육 성 지 원 부

'26년 2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사업 업무처리기준(안)

I 사업 개요

1. 목적

- ☐ 기부자의 숭고한 기부 취지를 반영한 장학사업 계획 수립 및 집행
- ☐ 다양한 분야의 저소득층 우수 대학생 대상 학자금 지원으로 교육 지원의 다각화 및 미래 우수 인재 양성에 기여

2. 근거

- ☐ 「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(사업) 및 제20조(기부금의 모집·접수)
- ☐ 「기부금품 조성 및 운영규칙」 제15조(기부금품 운영위원회)

- ① 기부금품 제반 업무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해 재단에 기부금품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.
1. 연간 기부금품 모집 및 기부금품 활용 사업 계획

3. 추진 일정(안)

내용	일정
보도자료 배포 등 선발 공고	~ '26. 8. 25.(화)
장학금 신청 및 서류 제출	'26. 8. 26.(수) 9시 ~ 9. 10.(목) 18시
장학생 심사	'26. 9. 11.(금) ~ 10월 말
장학생 선발 결과 발표	'26. 10월 말

※ 심사 기준일: 2026. 9. 11.(금)

※ 상기 일정은 신청 현황 및 심사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함

* 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(<http://www.kosaf.go.kr>) 또는 모바일 앱에서 학생이 직접 신청

II 공통 선발 기준

1. 학생 신청

☐ 신청 및 서류 제출 기간

- '26. 8. 26.(수) 9시 ~ '26. 9. 10.(목) 18시
 - 한국장학재단 누리집(www.kosaf.go.kr)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
 - ※ 신청 일정은 신청 현황·심사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함
 - ※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 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(단, 마감일 제외)
- 푸른등대 기부장학금은 동일 학기에 1개 기부자 유형만 신청 가능

☐ 기부자별 신청 서류 제출

- 신청서 작성 시 파일 업로드를 통해 기부장학금 신청 기간 내 제출
 - ※ 재단으로부터 서류 보완 요청 등 통보를 받은 경우 7일 이내 제출, 기한 미준수 시 미제출로 간주

2. 대학 추천

- ☐ 대학은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자의 신청 내역을 검토하고, 이수 학점, 성적, 학적 등을 반영한 학사정보 및 수납원장 제공 (대학 관리자포털 시스템에서 처리)

「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」

제50조의2(자료 제출의 요청) ①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
10.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의 학사정보: 고등교육기관에 대하여 고등교육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학업 성적 등에 관한 학사정보 자료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대하여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학업 성적 등에 관한 학사정보 자료

- 대학 학사·수납정보 등록 기간 내(심사 이전) 등록 완료
 - ※ 학사정보, 학적 상태, 학과명 등에 대한 심사는 심사 기준일 기준 대학에서 업로드한 정보로 심사 진행

☐ 정보 제공 방식

- 대학은 신청자의 학사정보 및 수납원장을 각각 대학 관리자포털 내 [학사정보관리]와 [수납원장관리]에서 등록
- 학사정보 및 수납원장 수정은 심사 이전 단계까지만 가능

3. 대상자 선정

□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적용

- 학생 가구원의 2026년 2학기 국가장학금 통합신청 등을 통해 산정된 2026년 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
 - 장학생 선발 심사 기준일 기준으로 확인된 학자금 지원구간을 심사 시 적용
 - 심사 기준일 기준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되지 않은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10구간으로 간주
- ※ 최초 재단 학자금 지원 시 확정된 학자금 지원구간은 동일 학기 내 변경 불가
- ※ 심사 기준일 기준 최신화 신청 진행 중이거나 심사 기준일 이후 최신화 신청에 의해 변경된 학자금 지원구간은 반영 불가
- 장학생 선발 가계소득·성적 배점표([붙임3] 참고)에 따라 학생 본인이 신청한 기부자 유형의 학자금 지원구간별 점수 적용
-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가 장학금 신청 시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 정보를 고의 또는 실수로 미입력(재외국민 특별전형 'N' 입력)하여 국외 소득재산을 미신고한 경우 심사 제외
 - ※ 단,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되어 국내외 소득재산조사 없이 학자금 지원구간 확정된 경우는 예외 처리

□ 성적

- 성적은 대학에서 산출·등록한 직전학기 성적(백분위 점수 및 이수학점) 사용
 - 성적이 Pass/Non Pass 등으로 기재되는 수업 수강 등으로 백분위 성적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산출된 최근 학기를 직전 학기로 적용
- 성적 배점기준([붙임3] 참고)
 - 성적 점수: (직전 학기 백분위 점수) X (기부자별 성적 배점 비율)

□ 장학생 심사

- 적격 여부가 확인된 학생 중 소득·성적 및 기부자별 심사 (자기소개서 등) 등을 진행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

구 분		평가 항목
1차	1단계	○ 적격 여부 확인: 선발 자격조건* 및 서류 확인
	2단계	○ 가계소득 평가: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 ○ 성적 평가: 직전 학기 백분위 성적 평가
2차		○ 기부자 요구에 따라 자기소개서, 면접 심사 등 진행

- * 선발 자격조건: 기부자별 신청 자격, 성적, 소득수준, 이수학점, 학적 상태 등 심사
- ※ 장학금 신청자와 가족관계는 '26-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함
- ※ 가족관계 판단 여부는 장학금 유형별 심사요건 및 기부자의 요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- 1·2차 심사 완료 후, 심사기간 동안의 학적 변동 내역을 반영하여 최종 합격자 선발
- 계속장학생은 계속 지원 조건(성적 및 이수학점 등) 충족 여부 심사 후 선발
 - 계속 지원 조건 미충족 시 장학생 자격 상실 및 장학금 지원 중단
- ※ 단, 계속장학생이 졸업 학기인 경우 최소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

4. 자기소개서, 면접 심사

□ 심사위원 위촉

-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을 위촉
- 심사위원은 기부자별 평가 기준을 근거로 위촉
- 위촉 세부 계획은 위임전결 규칙에 따라 부서장 전결로 위촉

□ 기능

- 기부자별 사업 목적 및 평가 기준을 근거로 개별 항목을 심사하여 점수 부여
 - 심사 시 AI 검증 시스템을 통해 심사 검증에 활용 또는 심사위원이 자기소개서 생성형 AI 사용 여부·표절률, 면접 분석 결과 등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심사위원에게 제공
- 심사위원이 심사 대상자와 이해관계일 경우 등 제척사유 발생 시, 해당 심사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심사위원 평균 점수로 대체

☐ 심사위원 임기

- 심사위원의 임기는 해당 학기 사업 종료일까지로 함

☐ 심사위원 수당

-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장학재단 예산집행 관리지침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

※ 기부자 및 재단 내부 위촉 심사위원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

5. 중복지원 방지

☐ 기본 취지

- 등록금 지원유형에 한하여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(등록금 규모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과 중복지원 불가)

※ 등록금 범위: 필수경비(입학금, 수업료) + 선택경비

☐ 중복지원 여부 확인

-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중 생활비 지원유형은 타 장학금 수혜 여부와 무관하게 수혜 가능하며, 등록금 지원유형은 타 등록금성 장학금 포함 당해 학기 총 등록금 범위 안에서만 수혜 가능
- 동일 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금,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간 중복 지원 불가(신규, 계속장학생 전체 해당)
- 장학생* 선정 후 중복지원이 확인되는 경우 중복지원 사유 해소 시 장학금** 지급

* 수혜를 받는 푸른등대 기부장학금이 학자금 중복지원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 가능

** 단, 해당 학기 지급 일정 마감 전까지만 중복지원 해소 인정 및 장학금 지급 가능함

6. 장학금 지급

☐ 장학금 유형: 등록금 및 생활비 무상보조, 정액 지원

☐ 장학금 지급 방식

- 재단은 장학금을 대학별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지정 계좌로 지급, 대학은 장학금을 학생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

7. 사후 관리

□ 장학금 반환

○ 아래 경우 중 1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생 자격 상실 및 해당 학기 장학금 반환

- 장학금 수혜 후 군입대·질병·출산·어학연수·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 등으로 자퇴·제적·타 대학 편입·재입학·졸업 등 학적이 변동될 경우
- 수혜학기가 초과학기일 경우

- 장학생이 타 장학금 수혜 등의 사유로 장학금 수혜 자격을 포기하는 경우

※ 장학금 수혜 자격 포기 시 [붙임6. 장학금 수혜자격 포기 신청서]를 작성 후 공문으로 제출

※ 단, 총 지원기간이 2년 이상인 장학금의 장학생이 휴학 시 장학금 최대 지원 기간 내에 한하여 반환 대상에서 제외

※ 장학금 미반환 시 향후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

○ 반환 대상 금액 산정

- 장학생이 학적 변동 등으로 자격이 상실될 경우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
- 「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」 제6조 제2항을 준용하여 반환액 산정

반환 사유 발생일*	반환기준	반환 금액 산정(예)
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	장학금의 6분의 5 해당액	$3,000,000\text{원} \times 5/6 = 2,500,000\text{원}$
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	장학금의 3분의 2 해당액	$3,000,000\text{원} \times 2/3 = 2,000,000\text{원}$
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	장학금의 2분의 1 해당액	$3,000,000\text{원} \times 1/2 = 1,500,000\text{원}$
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	반환하지 아니함	반환금 없음

* 반환사유 발생 일자 계산은 실제 학기 개시일 포함하여 산정

□ 장학금 반환 예외 심의(대학 공문 제출 필수)

○ 장학금 반환 사유 발생 시 반환기준에 따른 반환이 원칙이나, 본인의 중대한 질병, 사망, 사고, 지진·수해 등 천재지변 등에 의해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, 기부금품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환 대상에서 제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

※ 반드시 [붙임5. 반환 예외 처리 신청서(사유 등 기재)]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대학에서 공문으로 제출해야 함

※ 재단은 반환 예외 신청의 검토 과정에서 필요 시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신청자는 재단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재단에 제출해야 함

☐ 장학금 환수

- 장학생의 신청 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
 - 장학생 자격 상실 및 공공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정 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수금액 환수

「공공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정 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

□ 제2조(정의)

4. '공공재정'이란 공공기관이 조성, 취득하거나 관리, 처분, 사용하는 금품 등을 말한다.

□ 제8조(부정 이익 등의 환수)

- ① 행정청은 부정 청구 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 이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(이하 "부정 이익 등"이라 한다)를 환수하여야 한다.
- ② 행정청은 부정 이익 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공공재정지급금 지급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.

8. 기타 공통사항

☐ 선발 관련 예외사항 처리

- 선발 관련 기준이 각 사업별 선발 계획에서 정한 사항과 푸른등대 기부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 상 구체적인 내용이 없거나 그 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, 기부자와 협의하여 부서장 전결로 처리

☐ 계좌 관리

- 사업 전용계좌 신규 개설 또는 변경 시 재단으로 변경 요청 공문 발송
 - 대학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표지(첫 페이지) 사본을 붙임으로 하여 발송

☐ 발생 이자 처리

- 기부장학금 대학 지급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대학 자체 수입 처리

붙임 1. 개인(신용)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및 조회 동의서 2. 신청인 동의서
 3. 장학생 선발 가계소득·성적 배점표 4.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대상 범위 및 예외사항
 5. 장학금 반환 예외 심의 신청서 6. 장학금 수혜자격 포기 신청서. 끝.